

『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- 전자정보산업의 발전과정을 홍보하고 각종 국제회의 및 전시행사를 개최하여 IT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산업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(안 제3조)
- 전시실 및 회의실 사용료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별표)
- 산업관 시설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시설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제23조
- 「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1조, 제12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, 제27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22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제104조
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금년 4월 준공 예정인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시설사용료 및 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(안 제3조 및 별표)
-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사용허가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)
-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검토 결과

- 전자정보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·도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건립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근거하여 위탁관리 등을 규정한 조례안 임
- 조례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사용료에 있어 시설 사용료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, 집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- 더불어, 첨단 IT 산업의 집적지인 구미의 전자정보산업 발전과정 홍보와 지역혁신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등 디지털전자산업의 전사회의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